



창녕을 새롭게 군민을 신나게!

2024년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

< 추진 계획 >

- 사업기간: 2024년 1월 ~ 12월
- 신청기한: 2024년 1월 12일까지
- 사업대상: 창녕군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
- 사업량: 양파마늘수확기 등 20종
- 사업비: 3,400백만원(도비240, 군비1,460, 자담1,700)
- 지원방법: 융자지원한도액의 70% 또는 기준단가의 50%



창녕군농업기술센터
(기술지원과)

2024년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

1 목 적

- 수요자 중심의 농기계 공급으로 농기계 이용 효율성 제고
- 농업 기계화를 통한 농작업 편의 도모 및 작업시간 단축

2 요 약

사업명	사업량	대상기종	기준단가 (천원)	비고
계	20종			
맞춤형 농기계 지원 (중소형기계)	7종	양파마늘수확기(털털이) SS기(융자한도액10,000천원미만) 휴립복토기 줄기절단기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보행관리기		융자지원한도액 70% 보조 (도비사업)
맞춤형 농기계 지원 (대형농기계)	2종	트랙터 SS기(융자한도액10,000천원이상)		
일반 농기계 지원	6종	자동호스권취기 농업용컨베이어 곡물적재함 동력경운기 논두렁조성기 곡물건조기	2,000 3,000 4,000 5,500 7,000 15,000	기준단가의 50% 보조 (군비사업)
마늘생산 농기계 지원	5종	마늘쪽분리기 마늘선별기 마늘파종기 수집형마늘수확기 퇴비살포기	4,500 9,000 10,000 13,000 14,000	

- * 사업신청 취합 후 예산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별 대상기종 변경 될 수 있음.
- * * 대상기종은 수요조사 결과(기술지원과-10610호), 도비 대형농기계 지원, 군수
지시사항(밭작물 기계화율 향상 대책 마련)에 의거 선정

3 | 사업 개요

□ 공통사항

- 사업대상: 창녕군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
- 지원내용: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농기계(자동호스권취기 제외)이며 상세기종은 각 사업별 사업량 참고
- 농기계 구입가격 대비 보조금 지원비율은 50%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 최대한도는 12,000천원으로 부족분은 자부담으로 충당
※ 대형농기계지원은 농기계 용자지원한도액이 10,000천원 이상의 농업기계 대상으로 지원

□ 맞춤형 농기계지원

I . 맞춤형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

- 사업비: 1,400,000천원(도비 210,000^{15%}, 군비 490,000^{35%}, 자부담 700,000^{50%})
- 사업량: 7종(양파마늘수확기(털털이), 휴립복토기, 줄기절단기, 동력운반차, SS기_용자지원한도액 10,000천원 미만, 고소작업차, 보행관리기)
- 지원기준 : ‘농기계 목록집’ 기종별 용자지원한도액의 70%

<지원예시>

■ 휴립복토기 가격 7,800천원, 용자지원한도액 5,360천원이라면
- 농가지원액은 $5,360\text{천원} \times 70\% = 3,752\text{천원}$

⇒ 휴립복토기 금액 7,800천원(지원금: 3,752천원, 자부담 4,048천원)이며, 농기계 구입 가격대비 보조금 지원비율은 50% 초과할 수 없음

* 부속작업기는 제외

II. 맞춤형 대형농기계 지원사업

- 사업비: 200,000천원(도비 30,000^{15%}, 군비 70,000^{35%}, 자부담 100,000^{50%})
- 사업량: 2종(트랙터, SS기_융자지원한도액 10,000천원이상)
- 지원기준: ‘농기계 목록집’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%

<지원예시>

- 64마력 트랙터 가격 60,000천원, 융자지원한도액이 40,000천원이라면
 - 농가지원액은 $40,000 \times 70\% = 28,000$ 천원이 아닌 12,000천원
- ⇒ 트랙터 가격 60,000천원(지원금 12,000천원, 자부담 48,000천원이며), 농가지원액은 보조금 최대한도 12,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

* 부속작업기는 제외

□ 일반농기계 지원사업

< 지원기준 >

- 기종별 기준단가의 50% 지원 (부속작업기 제외)
 - 초과 금액은 자부담 처리하고, 기준 이하는 구입액의 50%지원

- 사업비: 544,000천원(군비 272,000^{50%}, 자부담 272,000^{50%})
- 사업량: 6종
 - 자동호스권취기: 기준단가 2,000천원(보조금 1,000천원)
 - 농업용컨베이어: 기준단가 3,000천원(보조금 1,500천원)
 - 곡물적재함 : 기준단가 4,000천원(보조금 2,000천원)
 - 동력경운기 : 기준단가 5,500천원(보조금 2,750천원)
 - 논두렁조성기 : 기준단가 7,000천원(보조금 3,500천원)
 - 곡물건조기 : 기준단가 15,000천원(보조금 7,500천원)

* 곡물건조기는 마을단위 공동이용 조직에 지원(5인 이상) p.13참고 - 타 농기계와 중복신청 가능

□ 마늘생산 농기계 지원사업

< 지원 기준 >

- 기종별 기준단가의 50% 지원 (부속작업기 제외)
→ 초과 금액은 자부담 처리하고, 기준 이하는 구입액의 50%지원

○ 사업비: 1,256,000천원(군비 628,000^{50%}, 자부담 628,000^{50%})

○ 사업량: 5종

- 마늘쪽분리기 : 기준단가 4,500천원(보조금 2,250천원)
- 마늘선별기 : 기준단가 9,000천원(보조금 4,500천원)
- 마늘파종기 : 기준단가 10,000천원(보조금 5,000천원)
- 수집형마늘수확기: 기준단가 13,000천원(보조금 6,500천원)
- 퇴비살포기 : 기준단가 14,000천원(보조금 7,000천원)

* 밭작물 기계화율 향상 대책 마련(군수지시사항 제 12호)에 의거 마늘 파종기 신청시 가점 20점 추가

4 | 사업신청

○ 신청방법

- 신청서<서식1>, 사업계획서<서식1-1>, 견적서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
2024년 1월 12일까지 주소지 읍·면사무소에 제출
* 구입 농기계 제조업체, 공급업체, 형식명,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
(공란 제출 시 감점 또는 대상자 제외)
- 읍·면에서는 신청서의 내용과 같이 **정확하게 엑셀파일 작성**(붙임 2)
- 가점 적용항목(장애인, 유공자, 귀농인)일 경우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
- 경영체등록번호 별 1기종 이상 중복신청 불가 및 점수배점표(p. 7) 숙지 후 신청
(단, 곡물건조기는 공동사용 원칙이므로 타 농기계와 중복신청 허용)
- 공란, 오기 등 입력 오류로 인한 대상자가 바뀌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함

○ 사업대상

- 관내 주소를 두고 『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
- 신청인 주소지 읍·면에 신청(타 주소지 서류 접수 시 해당 읍·면으로 이송)

○ 사업지원기종

- 신청일 현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‘농업기계 목록집’에 정부융자지원기종으로 등록된 농기계
- 생산업체·기종·규격 등 사업대상자(농업인)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며, 기종 구입 등 직접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.

5 대상자 선정방법

○ 대상자 선정방법(경영체 등록번호 기준)

- 농기계 보조사업 중복신청자는 1개 사업 외 모두 임의 탈락
- 각종 체납자 및 5년이내 기지원 된 동일기종 신청자는 대상자 제외됨
 - * 농업기술센터 내 타부서 사업 중 농기계가 포함된 경우도 동일 적용함
 - * * 단, 곡물건조기는 중복신청 가능
- 접수배점표에 따라 사업별로 순위를 정하고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
-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정함

ex) 2020년에 김서방(남편, 경영체번호1-000-000-000)이 A기종을 지원받고, 2022년에 공동경영주인 나부인(아내, 경영체번호1-000-000-0000)이 B기종을 지원 받았을시 해당 사업대상자는 1-000-000-000이며 기지원 횟수는 2회

- 포기자 발생에 대비하여 후순위자까지 선정

※ 사업 시작 전 농기계를 구입한 농업인은 대상자 선정 제외

-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이후 구입하여야 함

- 후순위는 추가 대상자 확정시 탈락으로 인해 자부담으로 신청 농기계 구입 상황을 감안하여 신청 보조금 금액 내에서 타 기종으로 변경 가능

- 곡물건조기는 지원계획(p.13 참고)을 참고하여 읍·면에서 대상 마을 선정하여 제출

- 읍·면별 3대 기본 배정 예정(3대 중 1대는 (사)한국쌀전업농 창녕군연합회 우선 선정 지원)이며 필요시 사업량 증가

■ 점수배점표(2024년)

구 분	점 수	적용방법
배점	재배면적 면적*0.004 (최대65점)	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면적*0.004
	수요조사신청 7	기술지원과-8749(23. 7. 3.)호 수요조사 신청자
	여성농업인 7	경영주인 농업인이 여성일 경우 (경영주외의 농업인이 여성일 경우 대상 아님)
	장애인 (증빙서류첨부) 7	신청인이 장애인이거나 주소지를 같이 하는 가족관계에 있는자(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)
	유공자 (증빙서류첨부) 7	신청자 본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
	귀농인 (증빙서류첨부) 7	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(2019년 포함하여 그 이전 전입자 제외)
가감점	구입계획, 마늘파종기 +20 ~ -50	마늘파종기 구입, 조기집행, 구비 서류 미비, 사업계획 미비, 공란 제출 등
감 점	기지원 -20~ (횟수)	- 20점 * 횟수
		- 금액(천원단위) * -0.005점 ex) 1,000천원 * -0.005점 = -5점
대상자 제외		-체납자 -농업경영체 미등록자 -기지원 동일기종 농기계신청자(사후관리 기간 내) -사업포기자(2021년 포기자부터 적용) -사업시작 전 농기계를 구입한 자

* 대상자는 사업별 또는 기종별로 순위를 세워 선정 예정

** 동점자 발생시: 유공자→장애인→귀농인→여성→재배면적 순으로 결정

*** 기지원대상은 2019년 사업부터 반영 및 곡물건조기, 충전식분무기, 자동충전기, 자동분무기는 해당아님

6 | 행정사항

○ 사업대상자(농가)

- ① 신청서(서식1), 사업계획서(서식1-1), 견적서(업체발급)를 기한 내 제출
 - 구입농기계 제조업체, 공급업체, 형식명, 사업계획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, 공란 제출 시 감점 처리됨
- ② 보조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입대금을 반드시 신청자 본인명의로 구입처에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(입금확인서 반드시 제출)
 - 농업인이 농기계 구입대금 전액을 구입처에 지급한 후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 교부 청구(통장사본 첨부)
- ③ 사유 없이 사업 계획기간 30일 이상 지연 시 사업대상자 제외됨
- ④ 해당 농기계 구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에 대하여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, 일반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실시요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

○ 공급업체(농기계사후관리업소, 제조업체)

- ① 농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기간 이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업인이 보조금을 청구하도록 하여야 함.
※ 사유 없이 사업 계획기간 30일 이상 지연 시 대상자 제외함
- ② 농기계 공급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이후 반드시 사업추진
 - 사업대상자에게 농기계공급 시 각종 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거래대금납부 확인, 공급사진, 기대번호, 청렴이행서약서) 첨부하여 제출

*** 현금거래 시 보조금 지급불가: 계좌거래내역서 반드시 제출**

 - 농기계 공급 시 보조지원 스티커 반드시 부착

※ 공급업체는 부당거래(가격표시위반) 유통시장 문란 시 공급업체 제외

○ 읍·면(담당)

- ①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(서식 1, 1-1) 접수 및 엑셀서식(붙임2) 공문 제출
 - 선구입, 경영체등록, 체납, 농기계목록집 등록여부, 기지원 등 반드시 확인
 - 엑셀 서식 작성 시 공란, 오기 등 입력 오류로 인한 대상자가 바뀌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함(확인 철저)
※ 곡물건조기는 지원계획(p.13 참고)에 따라 읍·면에서 선정(쌀전업농 1대 포함) 제출
- ② 신청서 접수에 따른 확인서(서식 1-2 신청자 보관용)를 신청자에게 발급 후 사본 보관(민원 발생 대비)
- ③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시 농가별 교부신청서 접수 및 제출(프로그램 이용)
 - 사업대상자 확정내용 및 후순위 후보내용 통보 이행
(필요시 대상자통보 공문 참조하여 탈락 사유 안내)
- ④ 교부결정 통보 후 사업완료 시 사업완료 확인서 및 보조금 교부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즉시 군에 제출
- ⑤ 사후관리(연 1회 이상 점검)
 -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, 제16조에 의거하여 관리해야 함

재산명	사후관리기간	처분제한 기준	비고
농업 기계	•기종별 내용연수 - 탈곡기, 곡물건조기: 8년 - 경운기, SS기 : 6년 - 관리기, 방제기 등: 5년	•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•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 불가 및 타 용도로 임의사용 금지	•농업기계 내용연수가 경과 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기계는 계속 사용

※ 기종별 내용연수는 「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」 별표2 참고

○ 농업기술센터

- ① 보조사업 신청서 접수 및 검토(1월 ~ 2월)
- ② 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대상자 선정(2월 말)
- ③ 보조금 교부신청서 · 청구서 접수 및 보조금 교부(수시)
- ④ 농기계 보조사업 스티커 제작 배부(사후관리업소 등)

본 기계는 2024년도 경상남도, 창녕군이
보조 지원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을 금지합니다.

2024. . .
창녕군농업기술센터

<서식 1>

()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

1. 신청자 및 구입신청 농기계

○ 신청자

성명		생년월일	
주소		전화번호(휴)	010-
상기 본인은 농기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고유식별번호(주민등록번호 등)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.			

○ 구입신청 농기계

기종명	제조 회사	규격 (형식명)	수량 (대)	단가 (천원)	농기계 금액(천원)			사후관리업소
					계	보조금	자부담	
			1					

○ 본인은 『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』, 『경상남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』 및 『농림사업시행지침』의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, 위반 시 처벌을 받을 것임을 확약하며, 향후 지침 변경시 변경지침에 따라 추진할 것을 확인합니다.

신청자 : (서명 또는 인)

2. 읍면확인

과거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현황			체납 (건)	귀농인	장애인	유공자	여성 농업인	농업경영체등록번호
기지원	포기	변경						
회	회	회						

읍면담당자 : (서명 또는 인)

202 년 월 일

붙임 1. 사업계획서 1부
2. 견적서 1부

창녕군수귀하

<서식 1-1>

사 업 계 획 서

□ 사업개요

사업명	기종명	사업비(천원)	사업량	사업기간(사업완료 월)

- 농번기 이후 구입할 경우 대상자 선정 시 감점 처리됨
- 공란으로 제출시 대상자 제외됨
- 사업 계획기간 내 사업 미완료시 사업대상자 제외

□ 사업비 산출 내역

사업내용(천원)				제조업체	사업비(천원)			비고
기종명	규격 (형식명)	수량	금액		계	보조금	자부담	
		1						

□ 사업효과

- 농업기계화로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와 적기영농추진

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본인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, 사업기간 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만약 사업부진 등으로 사업기간 내 미추진시 **대상자 제외됨**을 인지하고 있으며 또한 센터에서 추진하는 각 사업 중 농기계가 포함되어 중복지원 대상자로 판정될 경우 창녕군이 제한하는 처분 **(대상자제외)**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보조사업자 주소:

성명: (서명 또는 인)

<서식 1-2>

[신청자 보관용]

발급번호:

000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확인서

신청자 주소:

성명:

○ 구입신청 농기계

기종명	제조 회사	규격 (형식명)	수량 (대)	단가 (천원)	농기계 금액(천원)			구입 시기	사후관리업소
					계	보조금	자부담		
								월	

202 년 월 일

상기 신청내용이 본인이 신청한 내용과 동일함을 확인 합니다.

<신청인> 성명: (서명 또는 인)

<발급자> 소속: 읍·면
직: 성명: (서명 또는 인)

* 사본 읍·면에서 보관(민원발생시 필요)

<별지>

곡물건조기 지원계획

1. 사업개요

- 사업대상: 마을단위 공동이용 조직(5인 이상 구성)
- 사업량: 읍·면당 3대 배정예정, 1대는 (사)한국쌀전업농 창녕군연합회지원
- 기준단가: 15,000천원(도비 사업의 경우 융자지원한도액)
- 지원액: 기준단가의 50% (도비 사업의 경우 융자지원한도액의 70%)
- 지원기종: 곡물건조기(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등록된 농기계)
※ 집진기를 포함하여 구입하여야 함

2. 추진사항

- 사업시기: 1월 ~ 12월
- 신청서류: 신청서, 사업계획서, 견적서, 청렴이행서약서, 공동이용 회의록, 공동이용규약, 건축물관리대장 등

3. 교부청구

- 대표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 청구서 제출
- 청구서류: 청구서, 통장사본, 각종 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거래대금납부확인, 공급사진, 기대번호) 등

4. 사업대상자 이행조건

- 건축물관리대장상 농업용 창고 또는 용도에 적합할 것
- 건조기 설치로 주변 소음, 먼지발생 등 민원이 우려되는 장소 제외
(기타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장소 제외)
- 면세유류 공동구입사용
- 농업용 전기시설 설치

5. 주의사항

- 불법 건축물일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
- 개인용도로 활용 시 보조금회수 및 보조사업 참여 불가 등 행정조치

곡물건조기 회의록(참고)

- 일 시: 202 년 월 일 :
- 장 소: 마을회관
- 참 석: 명
- 안 건: 곡물건조기 지원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업계획 협의
- 회의내용

- 임시회장(홍길동): 2024년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본 마을에 지원됨에 따라 부지확보 구입기종 선택, 건조기 설치장소 지정, 전기인입시설, 자부담확보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.
- 임시회장(홍길동): 먼저 임원선출을 회장 1명, 부회장 1명을 두도록 하겠습니다.
적격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팔불출: 회장은 홍길동 씨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.
- 참석자 일동: 팔불출 씨의 말에 동의합니다.
- 홍길동: 회장은 제가 맡도록 하겠으며, 부회장은 나대로 씨를 추천하오니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참석자 일동: 회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.
- 회장(홍길동): 그럼 저를 회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회장님으로 추천되신 나대로님과 함께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추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.
- 회장(홍길동): 다음은 설치장소 및 관리자 지정입니다.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임꺽정: 곡물건조기 설치장소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 ○○○씨 집에 설치하고 관리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
- 회장(홍길동):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참석자 일동: 임꺽정 씨의 말에 동의합니다.
- 회장(홍길동): 그럼 곡물건조기는 ○○○씨 집에 설치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.
다음은 곡물건조기 기종을 선택하는 문제인데 어떤 기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많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팔불출: 기종은 우리 마을 영농규모에 적정한 00기업사의 000-00000 기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
- 참석자 일동: 팔불출 씨의 말에 동의합니다.
- 회장(홍길동): 사업비는 000천원으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은 0,000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 그럼 이와 관련한 자부담 및 기타 경비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으니 좋은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김남출: 보조금 외 곡물건조기 구입 및 기타 경비는 자부담으로 모든 회원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
- 회장(홍길동): 다른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?
- 참석자 일동: 김남출 씨의 말에 동의합니다.
- 회장(홍길동): 그럼 마지막으로 운영규약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. 운영규약 제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?
- 양공주: 운영규약제정은 추진위원회 및 임원진에서 구성하여 주시고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임원 일임하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.
- 참석자 일동: 양공주 씨의 말에 동의합니다.
- 회장(홍길동): 기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참석자 일동: 없습니다.
- 회장(홍길동): 이상으로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
공동이용시설 운영 약관(예시)

○○마을

공동이용시설 운영약관(안)

○○마을 ○○명은 (꼭물건조기) 공동이용 운영약관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마을은 다음과 같이 공동이용시설 운영약관을 정하여 공동이용 장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본 마을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이용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한다.

시설.장비명	수 량(대)	투자사업비(천원)	비 고
계			

제3조(회원) ① 회원은 ○○마을 주민으로 한다.

제4조(임원) ① 본 회의 임원은 대표이사 1명 이사 ○명, 감사 ○명, 총무 ○명으로 한다.
② 대표이사는 본 회를 대표하며 공동이용 장비 기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③ 총무 및 전담관리자는 재정회의록 관리대장 관리카드 기록정리 등 운영과 사후관리를 담당한다.

제5조(재정) ① 본 회의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공동이용 장비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회비를 납부한다.
② 회비는 ○○○원으로 연말결산 총회 때 납부 지출방법 등을 별도로 정한다.
③ 회비 금액 납부시기 등 총회를 거쳐 변경 할 수 있다

제6조(지출) ① 본 회의 공동이용 장비에 대한 운영비를 공동경비에서 지출한다.
② 총무는 지출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고 유지.관리한다.

제7조(이용) ① 공동이용 장비에 대하여는 참여인원(회원) 모두가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한다.
② 공동시설을 개인용 또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시는 보조금을 반납함은 물론 행정기관의 명령 기타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.
③ 장비 등은 사용 후 정비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 보관한다.

제8조(사후관리) ① 공동장비는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멸실될 때까지 관리한다.

- ② 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관리자를 지정 운영한다.
- ③ 장비의 전담관리자는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기록 정리하며 효율적인 이용과 유지보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④ 회원은 전담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시에 적극 따른다.
- ⑤ 회원은 장비를 이용함에 있어 장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내것처럼 아끼며 항상 깨끗이 사용한다.

제9조(결산) ① 본 회의 매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② 결산보고서는 감사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- ③ 결산잉여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액은 이월 또는 적립금으로 적립한다.

제10조(감사) 본 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는 연2회(6월, 12월) 실시한다.

제11조(약정체결 및 효력발생) ① 모든 회원은 장비에 대하여 개인용도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며 이 약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.

② 회원 모두는 본 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납은 물론 사업기관에 고 발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서명 날인한다.

○○○○년 ○월 ○일

○○마을 대표 ○○○

□ 공동이용 참여농가

202

※ 약관 내용은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바랍니다.(간인 필히 날인 할 것)

대표자 주 소:

성명: (서명 또는 인)

창녕군수귀하